

대전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1088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108811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4. 29 선고 2019가단334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홍성필, 최단비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2021. 7. 9.

판결 선고2021. 8. 27.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4. 29. 선고 2019가단3344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5,000,000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초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주문 1.나.항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그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가 되는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D조합은 1997. 8. 16. 및 1997. 12. 20. E와의 사이에 각 1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E의 각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2) D조합은 파산하였고 D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E,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03가소445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23. "E,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C에 대하여는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3. 7. 24.

확정되었다.

3) 파산자 D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5. 30.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후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C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피고는 2019. 3. 28.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3. 29.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3. 29. 접수 제60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등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4. 16.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위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20. 4. 29. 매각되면서 2020. 5.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아 수령할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 5. 26. 인용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카합5059호).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5. 27.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2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20. 5. 27. 아래와 같은 채권내역을 신고하였고, 집행법원은 채권액 중 가지급금을 제외한 74,361,263원을 원고의 채권으로 확인한 후 원고에게 5,532,701원을 배당하였다.

14,950,000원	59,411,263원	2,940,368원	77,301,631원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C가 1997. 8. 16. 및 1997. 12. 20. E의 D조합에 대한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D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C를 상대로 한 이행권고결정이 2003. 7. 24. 확정된 이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가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2019. 7.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타채1157호로 채무자인 C가 제3채무자인 G 주식회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2010. 9. 27. 보험금 1,445,476원을 추심하고 2013. 9. 26.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위 집행행위가 종료된 2013. 9. 26.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가) 채무초과 여부

갑 제1, 2,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시가 101,938,38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고,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71,007,139원[= 원금 14,950,000원 + 1998. 12. 30.부터 지연손해금 57,502,615원(14,950,000원×(20+89/365)×19%)-추심금 1,445,476원], ②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 ③ I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25,000,000원, ④ J에 대한 대출금 채무 6,500,000원, ⑤ 피고에 대한 채무 25,000,000원, 합계 137,507,13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C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로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C 본인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년 C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대여하고 2017. 1. 15. 추가적으로 현금 20,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25,000,000원, 월이자 400,000원, 변제기 2019. 1. 15.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7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3년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 15. 낙찰계금을 받자마자 현금 20,000,000원을 재차 대여한 점, ② 금융거래내역상으로는 C가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위 돈을 C가 아들인 K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대여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7. 9. 25.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3,0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3일 뒤인 2017.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채권최고액 3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매수자금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에게는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C는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피고는 C와 매우 인접한 거리에 거주하며 친밀하게 지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진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지조차 의심이 간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피고의 배당금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와 당심에서 변경한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이효선

판사박상준

판사신지은

별지